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개념을 현 실정에 맞게 재정립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방안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용어 정의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의 단서 조항을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여 모호한 대상 사업장의 해당 범위를 재확정(안 제2조제3호)

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9조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수수료기준 마련(안 제9조제3항)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따른 배출 및 수거방법 등 마련(안 제10조)

다. 기존 조례의 과태료 부과사항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원화(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 제15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10. 8)

나. 예산조치

'13년도 예산에 23억원(국비 7억원, 시비 16억원) 반영 예정

다. 기 타

신·구대조문대비표, 별첨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과 같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제
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
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은 제외
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이하 “납부필증(칩)”이라 한다)이
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구미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5조 중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3호 중 “자(「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를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이하 “종량제”라 한다)한다.

②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무게(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전용봉투, 납부필증(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무게 등을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무게단위)를 시행할 경우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⑥시장은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칩)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선불형 카드로 이용할 경우 카드충전소에 일정한 비율의 관리(충전)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⑦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하여 줄”을 “감면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기(전용수거용기) 관리자(단, 60세대 미만 전용수거용기 관리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발생 억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수거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이 정한 별표 2의 배출 및 수거방법 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담는”을 “담는 봉투는 일반봉투와 구분하여”로, “전용 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를 “전용봉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는 3리터, 10리터, 20리터로 구분

제작하여야 한다.

④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를 “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10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제12조제3항의 개선·대체 등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제15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배출·처리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4. 제16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20조 중 “사항은 법”을 “사항은 관련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및 제9조의2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완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기준(제9조 관련)

1. 수수료 기준

기 준	적용단위	금 액	비 고
세대당	부피단위	봉투 또는 납부필증(칩) 판매금액	
	무게단위	kg당 40원	

※다량배출사업장은 배출자와 운반업자, 처리업자 등 간의 계약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봉투 및 납부필증(칩) 공급·판매 가격

규 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비 고
봉투	납부필증(칩)				
3리터	3리터	37원	3원	40원	
	5리터	73원	7원	80원	
10리터		146원	14원	160원	
20리터	20리터	282원	28원	310원	
	60리터	846원	84원	930원	
	120리터	1,692원	168원	1,860원	

※납부필증(칩)의 판매수수료는 봉투판매 수수료와 같이 적용한다.

납부필증(칩)의 공급 및 판매 등의 사항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종량제봉투관련 규정에 준한다.

3. 납부필증(칩)의 규격

가. 색상

부피별	적 용	색 상	비 고
3리터	부피단위	노랑색	
5리터	〃	연두색	
20리터	〃	초록색	
60리터	〃	파란색	
120리터	〃	분홍색	

나. 표시내용 : 처리 수수료 납부증명서, 시마크, 구미시장, 용량 및 용도표시

다. 위조방지처리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삽입

라.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 규격, 색상, 디자인은,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등(제10조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공동주택(무계단위)	공동주택(부피단위), 단독주택, 다량배출업소 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업소
배출일자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매일
배출시간	배출가능일 18시부터 24시까지	좌동
배출장소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 기기 설치 장소 (주민불편이 없고 차량진입이 용이한 곳)	세대주가 지정한 장소나 대문, 업소 앞 (차량 진입이 용이한 곳)
수거·운반일	배출일 (음식물쓰레기가 50%이상 담겨진 전용용기)	배출일 (납부필증이 부착된 전용용기)

2.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기준

- 60세대당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배출량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단, 수집·운반처리업체와 상호계약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배출요령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조개 껍질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하며,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대상사업장을 가목으로 정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신 설>	제2조(정의) ----- ----- 뜻은 -----. 1. ·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4. ~ 6. (생략)

<신설>

제5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④ (생략)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은 제외한다)

4. ~ 6. (현행과 같음)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 (이하 “납부필증(칩)”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중
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
정에관한법률」 제2조) : 저온
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
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생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
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과 제4항에 따
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
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
제2항 별표 5의 금액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별표 2의 금액으로 한다.

②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
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

1. · 2. (현행과 같음)

3. -----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
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과 제4항에 따
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
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
에 비례하여 부과(이하 “종량
제”라 한다)한다.

②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세대 당 100원의 대행·관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 시에 이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동주택 지역은 월단위로 부과·징수하고, 관리비 부과일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관리비 납부 마감일로 하고, 관리주체에서는 징수한 수수료를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지역은 매분기 중간 달의 15일 현재 주민등록세대주에게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매분기 마지막달의 말일로 한다. 단, 매분기 중간 달에 전출입한 세대주에 대해서는 해당분기에 한해 1천5백 원을 감면한다.

라 단위 무게(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때 2%의 공가율을 적용하여 감액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는 공가율이 시장이 정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 실제 공가를 기준으로 감액 부과하여 줄 것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반영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전용봉투, 납부필증(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무게 등을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무게단위)를 시행할 경우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

⑥시장은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칩)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선불형 카드로 이용할 경우 카드충전소에 일정한 비율의 관리(충전)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⑦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
기 관리자

3. 가족이 동일번지 내에서 세
대 분가한 사실상 동일가구인
세대

4. 동일번지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와 이중 부과
되는 세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
다.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

- 감면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
기(전용수거용기) 관리자(단,
60세대 미만 전용수거용기 관
리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
다.)

3.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물류 폐
기물 종량제 및 발생 억제 시
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의 처리 협조)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의 처리 협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수거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이 정한 별표 2의 배출 및 수거방법 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담는 봉투는 일반봉투와 구분하여 ----- 전용봉투로 -----.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는 3리터, 10리터, 20리터로 구분 제작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삭 제>

④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

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략)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동주택과 다
가구주택-----

-----.

③-----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
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
한 조치) ①시장은 제10조, 제1
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
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명-----.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
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
한 조치) ①시장은 아래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다.

1. 제10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제12조제3항의 개선·대체
등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제15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배출·처리기준을 따
르지 않은 경우
4. 제16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준용) -----
----- 사항은 관련법-----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③ 생략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⑤ ~ ⑧ 생략

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

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

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제목개정 2010.7.23]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I. 목 적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함

II.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 ‘환경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III.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

- 동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수수료 종량제방식에 기초하여 배출, 수집·운반업무에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용함
-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종량제 방식 선정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이하“종량제”)한다.(안 제9조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을 구축함에 있어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RFID기반 개별계량 방식, 6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납부필증 방식으로 추계한다.

- (2)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RFID기기 설치	2,320,000					2,320,000
	○ 납부필증 구입	8,640	8,640	8,640	8,640	8,640	43,200
	소계	2,328,640	8,640	8,640	8,640	8,640	2,363,2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700,000					700,000
도 비							
시 비		1,628,640	8,640	8,640	8,640	8,640	1,663,200
민 간							
기 타							
합 계		2,328,640	8,640	8,640	8,640	8,640	2,363,200

5. 부대의견

- 세출(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재정 소요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 할 경우 세입(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예산과 세출(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비) 예산이 당초 예산에 비해 감소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청소행정과 박정용
연락처	054-480-5223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음식물쓰레기 배출세대 현황

구 분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60세대이상	60세대 미만		
세대수	169,055	79,434	3,602	79,707	6,312

2. 추진방향

- 공동주택(60세대미만) : 납부필증 방식
 - 음식물쓰레기 공동용기에 배출, 용기가 차면 배출자가 수수료 스티커를 구입 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
- 공동주택(60세대이상) : RFID(개별계량) 방식
 -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카드를 종량기기에 접촉한 후 음식물쓰레기 배출
 - 무게가 자동 측정되고 무게에 따른 비용을 월별 부과

3. 산출근거

구 분	RFID 기기설치	RFID 유지보수	납부필증
단 가	2,320천 원/대	설치비의 10%	30원/매